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②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부칙

- (1)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이 학칙은 199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항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이 학칙은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5)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7)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8)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 이 학칙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21) 이 학칙은 2024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2) 이 학칙은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